

「2025년도 모범 장애경제인 및 유공자」 포상 신청 공고

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모범 장애경제인을 격려하고,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『2025년도 전국장애경제인대회』 포상 신청·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7월 28일

중 소 벤 처 기 업 부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1 | 포상 개요

□ 포상 목적

-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「전국장애경제인대회」에서 장애인기업 육성·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장애경제인,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를 선정·포상
- 장애인기업 경영자의 사기를 고취하고, 발전 모델로 홍보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

□ 포상 부문 및 신청 자격

부문	신청자격
모범 장애경제인	경영혁신, 사회공헌 실천, 고용 창출 등 모범적 경영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경제인으로 3년 이상 장애인기업을 경영한 자
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	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장애인기업 제도개선, 장애인기업 육성·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자체,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
2 포상 규모

구분	훈격		계
	중소벤처기업부장관 (장관급)	특허청장 (차관급)	
모범 장애경제인	15	5	20
장애인기업육성 유공자	2	-	2
합계	17	5	22

※ 훈격은 정부포상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3 선정 절차

공고	신청접수 (‘25.7.28~8.2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메일 접수 (ajs@debc.or.kr) 전자문서 접수 (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)
평가 진행	사전심의 및 후보 추천 (‘25.9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포상 신청서, 공적조서, 공적 약술서 심의 및 후보 추천
	포상 결격사유 확인 (‘25.9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범죄경력,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, 세급체납, 사회적 물의 등 확인 *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중소기업부 공적심사규정 기준
	공적심사위원회 심의 (‘25.10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기부 공적심의회 의 포상 추천 후보자 훈격 심의
	포상확정 (‘25.10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벤처기업부, 특허청 표창 확정
포상	포상 (‘25.11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5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행사에서 포상 수여

※ 상기 절차는 평가 및 심의 일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□ 신청 기간

- '25. 7. 28.(월) ~ 8. 29.(금)

□ 서류 접수 및 문의

-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 접수 (문의처 : 02-2181-6524)
 - 이메일 : ajs@debc.or.kr
 - 전자문서 :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□ 제출 서류

NO	서류 항목	비고
1	모범 장애경제인 포상 신청서	지정 양식 (붙임 참조)
2	모범 장애경제인 공적조서	
3	모범 장애경제인 공적 약술서	
4	포상 신청에 대한 서약서	
5	사업자등록증명원	
6	장애인기업 확인서	
7	대표자 장애인증명서	
8	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
9	'23~'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	
10	① 상시근로자 고용 : 사업장 가입자명부(최근 3개월) ② 대표 1인 기업 : 대표자 건강보험료 납입증명	장애인 상시근로자는 장애인증명서도 제출
11	사회공헌활동 증빙서류	자유 양식
12	인증 증빙서류(성능인증, 지식재산권, 이노비즈 등)	

5 | 기타

□ 기타사항

- 심사 기준과 추천 제한 등 관련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
- 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서류는 반려할 수 있고,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
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적격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- 신청접수 현황 또는 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장 공고할 수 있음
- 지원내용, 절차, 유의사항 등 공고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